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제 명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개정사유

-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수당 지급 방식 개선 등(안 제5조제2항)
- 모범공무원 기록부 비치 등(안 제6조)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



2025년 12월 24일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59호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조문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포상금 등 지급)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원으로 하고, 그 지급 방법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은누리상품권이나 「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구사랑상품권으로 한다. 제6조(기록부 비치)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현행 제6조를 삭제하고, 현행 제7조를 제6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